#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575

발의연월일: 2024. 9. 3.

발 의 자:김민전·김용태·박상웅

주진우 • 박덕흠 • 박수민

김석기 • 인요한 • 김상욱

김기웅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교육·연구·진료·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 보건 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, 최근 코로나 19 등 세계적 감염병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높은 치과 진료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 해 왔음.

최근 의료계에서는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료, 특히 필수 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,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.

치과계 또한 구강암 환자, 구강악안면 감염 및 외상환자, 응급환자, 장애인 환자 등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영역의 정책적 연구와 지원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, 치과영역의 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·교육의 발전방안을 모 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.

따라서,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역량을 체계적·전문적으로 강화하여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4조제2항 등).

###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"를 "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"으로, "함으로써"를 "통하여"로한다.

제4조제2항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 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 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
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정부는 치과병원의 사업과 운영 등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출연, 보조 및 지원의 기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치과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

치과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.
제18조 전단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제19조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제20조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제22조제2항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한 행위 및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<u>서울대학교</u>	제1조(목적) <u>서울대학교</u>
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	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
(齒醫學)에 관한 교육·연구와	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
진료를 <u>함으로써</u> 치의학의 발	율성을 바탕으로 「고등교육
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	법」에 따른
건(口腔保健) 향상에 기여함을	
목적으로 한다.	<u>통하여</u>
	<u>.</u>
제4조(정관) ① (생 략)	제4조(정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	2
때에는 <u>교육부장관</u> 의 인가를	<u>보건복지부장관</u>
받아야 한다.	
제8조(임원) ① (생 략)	제8조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	2
이 되며, 이사는 다음 각 호에	
해당하는 사람(이하 "당연직	
이사"라 한다)과 이사회의 추	
천을 받아 <u>교육부장관</u> 이 임명	<u>보건복지부장관</u>
하는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	
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	
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	

- 이 풍부한 외부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· 2. (생략)
- ③ (생략)
- ④ 감사는 치과병원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(監査)하며, 이사회 의 추천을 받아 <u>교육부장관</u>이 임명한다.
- ⑤・⑥ (생 략)
- 제10조(치과병원장) ①·② (생략)
  -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 아 <u>교육부장관</u>의 제청으로 대 통령이 임명한다.
  - ④ ~ ⑦ (생 략)
- 제15조(출연 또는 보조) ①·② (생 략)
  - ③ 치과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 ·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(借 款)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치 과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. 다만,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.

<신 설>

	· 1.·2. (현행과 같음)
	③ (현행과 같음)
	<b>4</b>
	보건복지부
	<u> 장관</u>
	⑤・⑥ (현행과 같음)
제	10조(치과병원장) ①·② (현행
	과 같음)
	③
	보건복지부장관
	④ ~ ⑦ (현행과 같음)
제	15조(출연 또는 보조) ①·②
	(현행과 같음)
	③ 정부는 치과병원의 사업과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출연, 보조 및 지원의 기준 •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

운영 등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

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#### <신 설>

- 제18조(사업계획 등의 보고)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제19조(결산서의 제출) 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세입·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.
- 제20조(감독) <u>교육부장관</u>은 치과 병원을 감독하며, 원장에게 필 요한 사항의 보고나 서류의 제 출을 명할 수 있다.
- 제22조(과태료) ① (생 략)
 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	⑤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
	치과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
	위하여 치과병원에 금전이나
	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
	<u>다.</u>
제	
	보건복지부장관
	,
제	· 19조(결산서의 제출)
- 11	
	니 기 <b>너</b> 기 버 기 귀
	<u>보건복지부장관</u>
-11	
제	20조(감독) <u>보건복지부장관</u>
제	22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	②
	보건복지부장관